

제417회 국회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 간호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   |   |
|---|---|
| 1.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1 |
|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1 |
| 3.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 1 |
| 4.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 1 |
| 5. 간호법안(대안)                                 | 1 |

(09시23분 개의)

○ 위원장 박주민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 간호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 간호법안(대안)

○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안(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 죄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의 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4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늦은 시각까지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강선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 우선적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미애 간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어제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함께 애써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제까지 세 번의 소위를 열었습니다. 관련 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부

대의견으로 남겼습니다.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나 이번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부 여당이 본인이 스스로 했었던, 21대 국회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의료 현장을 도미노 붕괴에 빠뜨렸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은 번아웃 그 자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생, 각자도사에 몰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늘 해 왔던 것과 같이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어제 늦은 시간까지 소위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선우 간사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혼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백 리, 천 리를 다 갈 수는 없고 십 리라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입법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입니다. 6개월 이상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한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여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를 설득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00% 만족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고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자격에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수당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했고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위가 간호법 협치의 성과를 시작으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든 의료계를 비판하든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간호법 처리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신 강선우 간사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께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발언은 이 정도로 듣고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양당에서 어제 소위 심사할 때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소위의 일원으로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의결을 하면 어떨까 싶고, 더 어떤 의견을 내실 거면 본회의에서의 찬반토론도 있습니다. 그때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소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게까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약 1만 6000여 명의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고견들은 향후 법사위 심의와 법안 시행 준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깊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간호사분들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시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계셨고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겪며 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간호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 간호법,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은 2005년부터 계속 발의돼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 어떻게 보면 간호사분들에 대한 우리의 늦은 반성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간호법 통과를 두고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은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분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의료 공백을 메울 것이고요, 또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만 이 법을 만들었다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 드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 때로는 그림자처럼 존재해 왔던 간호사분들께 오늘은 그나마 위로가 되고 환한 빛이 비춰지는 날이길 기대합니다.

거부권 행사됐을 때 우시던 간호사분들의 열굴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23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종현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최보윤 추경호 한지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연광석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제2차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양윤석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8. 23.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5)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3)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5)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 8. 2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2)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8. 2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6)

이상 9건 8월 26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6.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6.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6)

이상 3건 8월 27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1	-	-	-